

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6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권고에 따라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 운영 체제로 전환하여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안전관리 민관협력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비상설 전환에 따른 기능, 운영 등 규정 정비(안 제2조, 제4조~제8조)
- 다. 용어 및 문구 정비(안 제2조, 제8조,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평상시 재난”을 “재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부
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운영) 협력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경우 해당 안건의
심의·의결을 위하여 운영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 임기는 협력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해산될
때까지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”를 “회의에 출석한 위
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재적위원”을 “구성된 협력위원회의 재적위원”으로
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재난관리업무 담당”을 “협력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재난
관리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비치하여야”를 “갖
추어 두어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협력위원회”를 각각 “협력위원회의 회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
구성된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
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모두 만료되는 때
에는 그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구미시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(이하 “협력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의 모니터링·제보</u>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<u>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</u> 등</p> <p>제3조(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제4조(운영) <u>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</u></p> <p>1. <u>평상시 :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</u></p> <p>2. <u>재난 발생시 :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</u>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재난</u> -----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<u>회의</u> <u>에 부치는</u> -----</p> <p>제3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협력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제4조(운영) <u>협력위원회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구성된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운영한다.</u></p>

전개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
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
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(생략)
2.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

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8조(간사)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협력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-----.

제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구성된 협력위원회의 재적위원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간사) ① -----

----- 협력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

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장-----.

② -----
----- 갖
추어 두어야 -----
-----.

제9조(수당 등) 협력위원회의 회의

-----.

----- 협력
위원회의 회의-----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중앙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소 관 부 서		안전재난과
입 안 자	과 장	서 성 교
	팀 장	박 성 희
	담 당 자	이 혁 진 (480-6732)